

제 호

최고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(○○읍·면사무소, ○○동 주민센터 담당자: 문의 전화:)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 사항
※ 작성 예 홍 * 동 (○○.○○.○○)		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2항)

년 월 일

읍·면·동장 직인

